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방법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삶의 터전을 둘러싼 권리 분쟁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민감하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의견 차이로 주택을 자발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임차권등기 명령'이다. 그런데 이 등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그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기존까지는 이를 근거로 반드시 민사소송이나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법에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및 등기비용을 소송 없이 '상계'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 인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임차권등기를 한 뒤 발생한 비용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한 데서 비롯됐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년 뒤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나, 결국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해지됐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그 비용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한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법에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권은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임차권등기 외의 변호사 비용이

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비용은 소송비용 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또는 인도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주택임대차법 제7조를 위반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임차인이 민사소송이나 소송비용 확정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관련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비용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임차인은 굳이 비용청구를 위한 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도 해당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임차권등기 비용에 대해 임차인이 보다 유연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법무법인 바른

현실이 된 AI 대체… 기회일까 위기일까



기자 수첩
김현정 (IT부)

직원을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하는 건 빅테크 기업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었다. 지난 주말 집 근처 카페에 들렀다가 테이블 간격이 좁아 옆자리 대화를 주워듣게 됐다. 이야기인즉, 자기가 다니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AI가 신입 직원보다 일을 잘해 새로 사람을 뽑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너는 괜찮은 거냐"는 친구의 물음에 그는 "중간 관리자라 아직은 괜찮지만, 아마 다음은 내 차례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앞날뿐 아니라, AI가 고용 시장을 집어삼킨 뒤의 근 미래도 걱정했다. 일자리가 사라져 사람들의 주머니가

비면, 이 점단 AI 기술을 누가 이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나왔다.

최근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에 흥미로운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AI 세상, 인간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콘텐츠에서 최 교수는 '직업 창출 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어렵고 힘든 일은 AI가 대신하고, 그 덕분에 생긴 여유와 생산성을 인간이 새로운 가치 창조에 활용하자는데.

최 교수는 "AI에게 일자리를 뺏긴다고 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맡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냐"며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최고경영자)가 한 얘기가 가장 현실적이다. AI 때문에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AI를 활용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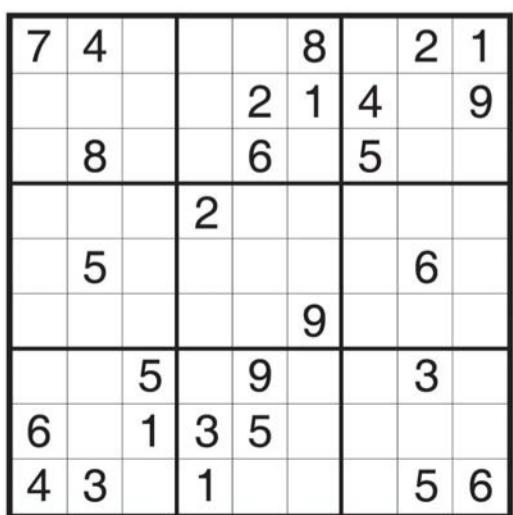
최 교수는 또 AI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와 공동체 위기도 우려했다. 그는 "성공하는 소수만 살아남고 대다수는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은 결국 사회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일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이 문제를 성장이나, 분배나의 이분법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언론사 입사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신이 된다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 사람들이 먹고사는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기본 소득으로 지급해 각자 원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모두가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지금처럼 치열한 아귀다툼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나 AI는 기술 그 자체이기에 이런 유토피아를 실현해줄 수 없다. 기술이 인간을 구원할지, 궁지로 몰아갈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hjk1@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번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김상회의四季

몸에 맞지 않는 옷



몸이 아프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병원에 다니면서 검진을 받았는데도 특별한 증상이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사업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자꾸 몸이 아프다면 이상하다고 했다. 상담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 아프다는 이유는 사주를 거슬러서 살기 때문이다. 상담을 온 사람은 사주에 편인이 강했다. 편인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성향이 있다. 사색하기를 좋아하고 깊이 몰두해서 분석하는 스타일이라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남들과 거리를 두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연구원 같은 전문 직종에 적합하다. 거기에 대해 사주 오행은 수의 기운이 강했다. 수수의 기운이 강하면 대체로 생활이 많고 과묵하다. 남들 앞에서 말을 조심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그런 사주의 특성이 사업하느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저녁이면 잦은 술자리에 가곤 했다. 사람들을 만나면 무엇이든 계속 얘기를 주고받아야 했다. 타고난 성향과 다르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쩌다 혼자 밥 먹을 때는 마음도 편하고 좋지 않으나 몰아보니 그렇다고 한다.

가끔 약속이 깨져서 혼자 점심을 먹으면 그렇게 훌기분하고 기분이 좋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사주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학문에 적합한 사람이 정치를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해야 좋을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타고난 성정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어딘가 자꾸 어긋나는 부분이 생긴다. 생활하면서 무언가 불편하고 심하면 몸이 아프다. 그럴 때는 자기만의 해소 방법을 찾는 게 좋다. 상담을 청한 사람 같으면 가끔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좋다. 그 시간은 숨구멍 같은 것인데 한결 몸이 편해진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570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기50111	2017년 3월 09일 제180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